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25. ~ 6. 7., 7. 26 ~ 8.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1건 신설(근로자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73조제2항”으로, “사업주”를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제161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장제1절에 제1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

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

제2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영 제110조제1호 및 이 규칙 제238조제2항에 따른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의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둘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 나.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체
- 다.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 라. 제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 마.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제1호가목1)의 유해인자란 중 “(Dimethylacetamide; 127-19-5)”를 “(Dimethylformamide; 68-12-2)”로, “(1,2-Dichloroethylene; 156-59-2 등)”을 “(1,2-Dichloroethylene; 540-59-0 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161조”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의 ⑤란 중 “제품 내 모든”을 각각 “제품 내”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뒤쪽의 붙임 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 서류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다만,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거나,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나 서류. 다만,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혀 있는 경우 제2호의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 서류와 국외제조사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 심사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즉시 제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시에 2명 이

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이하 이 표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면적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물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전화번호		
		총 명 (남 명 /여 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기간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기간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기간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 건 민원처리결과에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아래의 * 란은 원수급인이나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만 작성합니다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명)
	굴착깊이(M)*	건축물·공작물의 최대높이(M)*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의 최대층고(M)*
	PC(Precast Concrete)조립작업 유무*	다리의 최대 지간 길이(M)*
	터널길이(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 건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 총괄·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기관 (민간) []기업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건설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공주도 총괄·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기관 (민간) []기업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건설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 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략)

<신설>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① -----

-----.

1. ~ 4. (생략)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u><단서 신설></u> 6.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u><신설></u>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 -----<u>. 다만,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u>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